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페이지
1.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1
2. 2025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48
----------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5. 5. 23.
-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결산현황

가.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82만 7,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	-	7,827,510	7,827,510	-	-	100.0%
세외수입	-	-	7,827,510	7,827,510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	7,827,510	7,827,510	-	-	100.0%

-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의 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4년 3월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수납 : 180,790원
 -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검사 결과 잔액 반납 : 7,646,720원
 - 구의회 비데 렌탈물품 대수 및 임차료 변경에 따른 잔액 발생(장기 보유 잔액) : 137,368원
 - 8대 의원 노트북 변상금(2,925천원) 및 예금 결산 이자 등 반납금

세외수입 미조치 잔액(장기 보유 잔액) : 7,473,887원

- 장기 원인 미상 잔액 : 35,468원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604,872,000	4,604,872,000	3,829,885,650	-	774,986,350
선진의회상 정립	2,028,392,000	2,028,392,000	1,758,982,090	-	269,409,910
의정활동 지원	1,930,612,000	1,930,612,000	1,662,196,920	-	268,415,080
의정활동 홍보	97,780,000	97,780,000	96,785,170	-	994,830
행정운영경비	2,576,480,000	2,576,480,000	2,070,903,560	-	505,576,440
인력운영비	2,401,596,000	2,401,596,000	1,931,651,790	-	469,944,210
기본경비	174,884,000	174,884,000	139,251,770	-	35,632,230

-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6억 487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함.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3.17%인 38억 2,988만 5,650원이 지출되었고, 7억 7,498만 6,350원(16.83%)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지원’ 은 예산현액 19억 3,061만 2,000원 중 16억 6,219만 6,920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홍보’ 는 예산현액 9,778만원 중 9,678만 5,170원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는 예산현액 25억 7,648만원 중 20억 7,090만3,560원을 집행했음.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 지원: 2억 6,841만 5,080원(불용률 13.9%)
 - 의정활동 홍보: 994만 830원(불용률 1.02%)
 - 인력운영비: 4억 6,994만 4,210원(불용률 19.57%)
 - 기본경비: 3,563만 2,230원(불용률 20.37%)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과목	집행잔액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774,986,350	9,315,000	-	765,671,350	-
선진의회상 정립	269,409,910	9,315,000	-	260,094,910	-
의정활동 지원	268,415,080	9,315,000	-	259,100,080	-
의정활동 홍보	994,830	-	-	994,830	-
행정운영경비	505,576,440	-	-	505,576,440	-
인력운영비	469,944,210	-	-	469,944,210	-
기본경비	35,632,230	-	-	35,632,230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7억 7,498만 6,35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으로 931만 5,000원, 지출잔액으로 7억 6,567만 1,350원이 발생하였음.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4	4,604,872	3,829,886	774,986	16.83%
2023	4,033,439	3,464,764	568,675	14.1%
2022	4,186,280	3,108,473	1,077,807	25.75%
2021	4,607,348	3,886,253	721,095	15.65%
2020	3,868,848	3,487,930	380,918	9.85%

- 2024년 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5억 7,143만 3천원 증가되었으나, 2023년 결산 대비 불용액은 2억 631만 1천원 증가함.

마. 과다불용액(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구의회사무국	4,604,872,000	3,829,885,650	774,986,350	16.83%
선진의회상 정립	2,028,392,000	1,758,982,090	269,409,910	13.28%
의정활동 지원	1,930,612,000	1,662,196,920	268,415,080	13.9%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848,957,000	1,620,259,760	228,697,240	12.37%
인건비	40,499,000	24,662,510	15,836,490	39.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499,000	24,662,510	15,836,490	39.10%
일반운영비	142,791,000	126,808,450	15,982,550	11.19%
사무관리비	94,737,000	94,615,883	121,117	0.13%
공공운영비	44,754,000	32,192,567	12,561,433	28.07%
행사운영비	3,300,000	-	3,300,000	100%
여비	44,350,000	27,597,170	16,752,830	37.77%
국내여비	9,350,000	4,926,300	4,423,700	47.31%
국제화여비	35,000,000	22,670,870	12,329,130	35.23%
업무추진비	53,494,000	39,584,600	13,909,400	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494,000	39,584,600	13,909,400	26%
직무수행경비	17,857,000	16,186,660	1,670,340	9.35%
특정업무경비	17,857,000	16,186,660	1,670,340	9.35%
의회비	1,394,442,000	1,277,238,640	117,203,360	8.41%
의정활동비	342,000,000	328,400,000	13,600,000	3.98%
월정수당	615,794,000	594,186,340	21,607,660	3.51%
의원국내여비	19,630,000	3,896,400	15,733,600	80.15%
의정운영공통경비	108,000,000	107,607,910	392,090	0.3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0,893,000	108,489,040	12,403,960	10.26%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1,700,000	1,896,000	9,804,000	83.79%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7,400,000	16,800,000	10,600,000	38.69%
의원정책개발비	95,000,000	66,000,000	29,000,000	30.53%
의장협의체부담금	10,000,000	10,000,000	-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398,000	16,584,840	2,813,160	14.5%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627,000	23,378,110	1,248,890	5.07%
일반보전금	5,400,000	-	5,400,000	100%
행사실비지원금	5,400,000	-	5,400,000	100%
포상금	3,200,000	1,108,800	2,091,200	65.35%
포상금	3,200,000	1,108,800	2,091,200	65.35%
연금부담금등	39,600,000	-	39,600,000	100%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	39,600,000	100%

시설비및부대비	44,560,000	44,430,000	130,000	0.29%
시설비	44,560,000	44,430,000	130,000	0.29%
자산취득비	62,764,000	62,642,930	121,070	0.19%
자산및물품취득비	58,764,000	58,645,080	118,920	0.2%
도서구입비	4,000,000	3,997,850	2,150	0.05%
국외 선진의회 연수	81,655,000	41,937,160	39,717,840	48.64%
일반운영비	980,000	350,000	630,000	64.29%
사무관리비	980,000	350,000	630,000	64.29%
의회비	80,675,000	41,587,160	39,087,840	48.45%
의원국외여비	80,675,000	41,587,160	39,087,840	48.45%
의정활동 홍보	97,780,000	96,785,170	994,830	1.02%
의정활동 언론 홍보	33,000,000	33,000,000	-	-
일반운영비	33,000,000	33,000,000	-	-
사무관리비	33,000,000	33,000,000	-	-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64,780,000	63,785,170	994,830	1.54%
일반운영비	43,000,000	42,312,140	687,860	1.60%
사무관리비	30,848,000	30,734,140	113,860	0.37%
공공운영비	12,152,000	11,578,000	574,000	4.72%
자산취득비	21,780,000	21,473,030	306,970	1.41%
자산및물품취득비	21,780,000	21,473,030	306,970	1.41%
행정운영경비(구의회사무국)	2,576,480,000	2,070,903,560	505,576,440	19.62%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2,401,596,000	1,931,651,790	469,944,210	19.57%
인력운영비	2,401,596,000	1,931,651,790	469,944,210	19.57%
인건비	2,401,596,000	1,931,651,790	469,944,210	19.57%
보수	1,688,100,000	1,221,629,740	466,470,260	27.63%
기타직보수	713,496,000	710,022,050	3,473,950	0.49%
기본경비	174,884,000	139,251,770	35,632,230	20.37%
기본경비	174,884,000	139,251,770	35,632,230	20.37%
일반운영비	111,683,000	110,669,470	1,013,530	0.91%
사무관리비	103,908,000	103,176,060	731,940	0.7%
공공운영비	7,775,000	7,493,410	281,590	3.62%
여비	40,320,000	11,677,000	28,643,000	71.04%
국내여비	40,320,000	11,677,000	28,643,000	71.04%
업무추진비	15,081,000	13,226,270	1,854,730	12.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881,000	3,793,080	87,920	2.2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00,000	1,038,000	1,762,000	62.9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0,000	8,395,190	4,810	0.06%
직무수행경비	7,800,000	3,679,030	4,120,970	52.83%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000	3,679,030	4,120,970	52.83%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예산 이용·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총 1건, 4,410,00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무관리비	97,647,000	4,410,000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시설비	40,150,000	-	4,410,000

- 부의장실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설치 (374만원)
- 의원연구실 부속실 추가 환경개선비 부족분 (67만원)

- 예산 변경: 총 3건, 5,990,000원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행사운영비	4,800,000	1,500,000	-	
			사무관리비	93,237,000	-	1,500,000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30,400,000	3,000,000	-	
			의정운영공통경비	105,000,000	-	3,000,000	
	기타	기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9,265,000	1,490,000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2,418,000	-	1,490,000

- 사무관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부족분 (150만원, 300만원)
: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및 국내·국외 의정연수 실시 등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 기본경비 예산 부족분 (149만원)
: 2024년도 2월 의회사무국 총 정원이 29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예산 부족분

사. 다음연도 이월액 : 해당 없음.

아. 기금 결산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표 1. 결산 검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대표 위원	구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25. 3. 31. ~ 4. 25.	김승수	한선미	주상민	김남선	심상철	유상렬	이준호

<표 2. 의회사무국 결산 검사 결과 현황 및 문제점>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의정활동 지원(건)	의회 회기운영, 의정실무연수, 국내외비교시찰 실시, 수당 지급 등 횟수	2024	26	26	100%
		2023	26	26	100%
의정활동 홍보(건)	홍보 횟수, 의정홍보디지털게시판 운영 등	2024	100	172	172%
		2023	80	169	211%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검사 의견으로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함.²⁾
-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가 달성률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100%를 전제로 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실질적인 성과관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정활동 홍보' 지표의 경우, 실적과 괴리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지표의 정합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이에 이전 성과 대비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며 '의정활동 지원' 관련 지표는 지방의원 회의참석률, 정책연구회 활동 실적 등 의정역량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하는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형식적 성과관리 지표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회계연도 결산 중 의회사무국 세입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은 기타잡수입(그외수입)과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검사 결과에 따른 잔액이 예치되어 발생하였음. 관리실태 검사 결과 잔액 반납의 주요 사유는 장기간 세외수입 미처리 사항과 비데 임차 물품의 계약 사항 변경, 8대 의원 노트북 변상금 수납 미반영임.
- 이 같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계획적 발생과 장기간 세외수입 미처리한 사항은 계약변경이나 노트북 변상금 수납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억 48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3.17%인 38억 2,988만 5,65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7억 7,498만 6,35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불용률 14.1%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소폭 증가함. (14.1% → 16.83%)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과 같으며,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16.83%)은 전년대비 2.73%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0% 이상인 행사운영비,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예산이 100% 불용되었으므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기 과다불용 발생 현상은 반복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연례·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수요 기반 예산편성보다는 기계적 편성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에 반복적 불용 사업에 예산편성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제도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총 13억 9,444만 2,000원 중 12억 7,723만 8,640원을 집행(집행률 91.59%)하였음.
- 의원국내여비는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편성금액 대비 80.1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3.79%임.
- 2023년 의원역량개발이 민간위탁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

여 해마다 높게 나타나던 불용률을 다소 개선하였으나, 2024년에 다시 구의회 평균불용률 대비 높은 불용률로 회귀하였음.

<표 3.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연도별 불용률>

연 도	2024	2023	2022	2021	2020
불용률	83.79%	24.41%	77.84%	65.43%	88.51%

- 포상금 예산은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시 부상품(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65.35%로 전년대비 17.25% 감소함.
- 이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2023년 결산 검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피드백을 이루어 바람직하나,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중 포상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4. 의원정책개발비 연도별 집행 현황>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95,000,000원	95,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
집행액	66,000,000원	64,000,000원	0원	0원
불용률	30.53%	32.6%	100%	100%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음.
- 2024년도는 ‘도시공간 연구회’, ‘저출생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총 3개의 연구단체가 운영되었음.

- 의원정책개발비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재원이므로 제도적 명확성, 집행 지원 체계 구축, 실적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실적 예산집행계획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이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441만원, 1건과 예산 변경 599만원, 3건으로 소요 예산을 사용했음.
- 예산 전용은 ‘부의장실 냉난방기 설치’ 및 ‘의원연구실 부속실 추가 환경개선’ 건으로서 사무관리비 441만원을 전용하였음. (자산및 사무관리비 → 시설비)
- 부속실 집기비품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로 환경개선 공사 추진(싱크대, 선반 등 설치) 중 바닥 데코타일 철거 및 설치, 보조의자 설치 추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확보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이는 사업 계획과 추계가 면밀하게 계획되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므로 예산 심의권 존중 차원에서 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
-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률은 예년보다 낮게³⁾ 나타났음. 하지만 연도말 예산액 3,040만원 중 30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 변경함.
- 이는 ‘2024년도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 및 국내·국외 의정연수 실시 등 의정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부족분

3) 2022년 불용률 2.96%, 2023년 불용률 73.68%, 2024년 불용률 38.69%

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계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행사운영비 또한 같은 시기에 사무관리비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예산액 480만원 중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함.
- 행사운영비의 경우 예산변경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예산이 과다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 해마다 연말에 편성목별 예산부족분 충당을 위해 남은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 사업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용보다는 집행을 관리 중심의 관성적 행정으로 사업 계획의 부족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겠음.
-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

2025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60
----------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나. 제 출 일 : 2025. 5. 23.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7만 7천원 증가한 54억 3,448만 4천원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434,484	5,431,107	3,377	0.06%
정책사업	2,202,660	2,119,763	82,897	3.91%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3,231,824	3,311,344	△79,520	△2.40%

다.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434,484	5,431,107	3,377	0.06%
일반공공행정	2,202,660	2,119,763	82,897	3.91%
입법및선거관리	2,202,660	2,119,763	82,897	3.91%
기타	3,231,824	3,311,344	△79,520	△2.40%
기타	3,231,824	3,311,344	△79,520	△2.40%

라.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434,484	5,431,107	3,377	0.06%
인건비	3,072,274	3,151,794	△79,520	△2.52%
인건비	3,072,274	3,151,794	△79,520	△2.52%
기타직보수	332,747	412,267	△79,520	△19.29%
물건비	2,089,188	2,072,988	16,200	0.78%
의회비	1,526,926	1,510,726	16,200	1.07%
의정활동비	115,200	105,000	10,200	9.7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893	120,893	6,000	4.96%
자본지출	191,222	124,525	66,697	53.56%
시설비및부대비	108,657	41,960	66,697	158.95%
시설비	108,657	41,960	66,697	158.95%

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5,434,484	5,431,107	3,377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2,000,382	1,917,485	82,897
의회비	1,427,176	1,410,976	16,200
의정운영공통경비	115,200	105,000	10,200
1)의정운영공통경비 115,200,000원	115,200	105,000	10,20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26,893	120,893	6,000
1)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893	120,893	6,000
2)교섭단체 대표의원 500,000원*2명*6월	6,000	0	6,000
시설비및부대비	108,657	41,960	66,697
시설비	108,657	41,960	66,697
1)1층 전문위원실 환경 정비 15,000,000원	15,000	0	15,000
1)직원휴게실 환경 정비 19,500,000원	19,500	0	19,500
1)의회청사 간판 교체 32,197,000원	32,197	0	32,197
인력운영비	3,052,046	3,131,566	△79,520
인건비	3,052,046	3,131,566	△79,520
기타직보수	332,747	412,267	△79,520
1)홍보기록팀 시간선택제(라급)	131,770	211,290	△79,520
2)성과연봉	7,230	86,750	△79,520
3)S등급 59,013,000원*35/40*8%*1명	4,131	49,571	△45,440
3)A등급 59,013,000원*35/40*6%*1명	3,099	37,179	△34,080

3.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억 3,110만 7천원에서 0.06%, 337만 7천원이 증가한 54억 3,448만 4천원임.

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2025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020만원(9.7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교섭단체 대표의원 2명) 600만원(4.96%),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층 전문위원실 환경 정비 1,500만원(순증), 직원휴게실 환경 정비 1,950만원(순증), 의회청사 간판 교체 3,219만 7천원(순증), 총 8,28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인건비 기타직보수 성과연봉(홍보기록팀 시간선택제 라급 S등급 및 A등급) 중 7,952만원(37.64%)이 감액 편성되었음.

4.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이라 한다.)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신규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

- 2025회계연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신설(2023. 3. 21. 시행)⁴⁾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24. 12. 26.)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그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책임정당제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우리 구의회는 2025년 2월 12일자로 양당(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음.
- 다만, 예산의 규모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성되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상임위원회 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편성이 요구됨. 또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정운영공통 경비’는 공적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회운영 관련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집행계획 수립 및 항목별 상세내역 공개 등을 통해 예산 남용 및 선심성 집행 우려를 차단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4)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당내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시설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환경 정비 비용과 의회 청사의 노후된 간판 교체 등을 목적으로 신규 편성된 바 있음. 해당 사업은 직원 복지 향상 및 청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시설사업의 특성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재 및 공법 선택 시에도 경제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기타직 보수인 ‘시간선택제 직원 성과연봉’ 감편성은 성과연봉의 지급 산식 1회분을 12개월로 산정하여 초과 편성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향후에는 유사한 계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⁵⁾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상시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김 자 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